

의안번호	2217521
의 퇴 인	강명구의원
회 답 일	2026.7.23.
추계번호	26B1500

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6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(주차장설비기준 등)	제1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화문, 방화벽 등 화재 안전에 필요한 방화시설 및 소방시설(이하 “방화시설등”이라 한다)을 설치하여야 한다..(제5항)<신설>	의무규정
		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5항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에 방화시설등을 설치(기존 시설의 보수를 포함한다)하려는 자에게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(제6항)<신설>	재량규정

II. 미첨부 근거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근거규정
1	안 제6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(주차장설비기준 등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- 개정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방화문, 방화벽 등 화재 안전에 필요한 방화시설 및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,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방화시설 등의 신규 설치 또는 기존 시설 보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, 이를 시행하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

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.

- 그런데 방화시설 등의 종류, 설치대상, 설치기준 및 적용범위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, 개정안에 따른 방화시설 등을 갖춘 주차장과 미설치된 주차장 현황정보가 부재하여 향후 방화시설 지원이 필요한 대상이 불확정적이며,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여부, 지원대상, 지원율, 지원한도 및 재원분담비율 등 구체적인 지원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현시점에 관련 비용을 합리적으로 추산하는 데 한계가 있음
- 참고로 2026년 3월 31일 기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은 다음과 같이 나타나고 있으며 참고할 수 있음

[표 1] 운용주체별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현황('26.3.31 기준, 누계)

(단위: 기)

운영주체	2023	2024	2025	2026.3
국가(기후에너지환경부)	7,863	8,353	8,517	8,538
지방자치단체	944	1,073	1,215	1,232
민간사업자(재정투입)	145,589	198,974	258,824	279,289
합 계	154,396	208,400	268,556	289,054
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관)	8,807	9,426	9,732	9,765

자료: 기후에너지부 제출자료

-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개정안에 따른 재정소요의 변화를 현 시점에서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,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

Ⅲ. 부대의견

- 없음

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경제비용추계과	남 희	예승우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남 희	02-6788-3737	nhee@nabo.go.kr